

#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544호)

#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5. 28 고 성 군 수  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6. 2  
다. 상 정·의 결 일 자 : 1999. 6. 24 산업건설위원회 상정·의결

## 2. 개정이유

- 0 군립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.

### 3. 주요골자

-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를民間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신설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0 본 조례는 1998년 7월31일 제62회 고성군의회(임시회)에서 가결공포된 조례로서 제17조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제6항 다음에 제7항 "군수는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"를 신설코자 함은 국민의 정부에서 주도하는 행정의 구조개혁과 행정기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위탁 관리가 요구되는 관광지 및 공원관리업무 등을 사안에 따라 민간위탁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## 5. 질의 및 답변

- 0 문 : 현재까지의 입장료 징수 및 공원내 청소 등 그 관리상태를 설명  
● 답 : 98년 7월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 
    본안이 개정되면民間에게 위탁하여 입장료 징수와 청소업무 등을 관리도록 할  
    것임.

## 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1999. 6. 2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